

의안번호 제141호

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		
제출연월일	2020. 10. 13.		

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141호

제출연월일: 2020. 10. 13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근거법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었음에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O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기금 일반회계 전출

다. 기타사항:

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2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0.09.02. ~ 2020.09.23. 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

□ 폐지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 채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.

소	관	부	서	성	명
입 안	도 시	정 책	과 장	이 남 해	
	도 시	개 발	팀 장	홍 형 선	
자	담	당	자	조 성 빈 (746-6224)	

참고

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3항·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.(전문개정 2008, 09, 19)
- 제2조(설치 및 관리)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」(이하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(개정 2008. 09. 19)
- 제2조의2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(신설 2018, 12.31.)
- 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논산시 귀속분
- 2.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
- 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
- 2.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
- 3.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집행
- 4. 기반시설부담금의 논산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
- 제5조(회계공무원)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.(전문개정 2008. 09. 19)
- 1. 징수관: 행복도시국장
- 2. 재무관 : 친절행정국장(개정 2015. 9. 10)
- 3. 분임징수관 : 도시정책과장(개정 2017. 11. 10)(개정 2019. 12. 13.)
- 4. 분임재무관 : 회계과장(개정 2015. 9. 10)
- 5. 수입금출납원 : 도시행정담당
- 6. 지출원 : 경리업무담당
- 제6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- 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